의안 번호	91

창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김우진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창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김우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1

발의연월일 : 2026. 10. 15.

발 의 의 원 : 김우진・김원일・남재욱・문순규・박강우
박연정・박영주・박찬열・배명갑・서명일
이무식・전홍표・지상록・진형익
하경석 의원(15명)

1. 제안이유

친환경농업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의 기본 방향과 친환경농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농축산물의 공급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

1항에 따라 설치된 창원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경상남도가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확대 사업
3. 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및 수출 활성화 사업
4. 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비 보전을 위한 사업
5.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농자재 구입 지원사업
6.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7. 친환경농업 안전성·환경 가치 홍보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계 법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중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축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축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해 얻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및 유기임산물(이하 “유기농축산물”이라 한다)
 나. 무농약농산물
3. “유기식품”이란 유기농축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유기식품등”이란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5. “유기농업자재”란 유기농축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①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도 실천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군·자치구 실천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제15조(정책심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 약 서

- 창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

□ 제정 개요

○ (조례안명) 「창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 (발 의 자) 김우진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 (상정시기) 제1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026. 10월 예정)

□ 제정 목적

○ 친환경농업의 생산기반 강화 및 안전한 농산물 공급 촉진

○ 친환경농업의 기본방향과 친환경농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 명시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및 제4조)
▶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검토 결과 : 조례 제정 수용

○ 관계법령 저촉 여부 : 저촉사항 없음

○ 비용부담

추계 기간	연 평균 소요 비용	총 소요 비용(5년 간)
2027년~2031년	**3,294백만원**	16,473백만원

○ 종합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창원시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와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친환경농업의 생산기반 강화와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제정에 동의함.

「창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의원발의 조례 제정(안) 검토 보고

1 관련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2 발의 개요

○ 조 례 명 : **『창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 상정시기 : 2026. 10월 임시회

○ 발 의 자 : 김우진 의원(건설해양농림위원회)

○ 제안이유 : 친환경농업의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의 기본방향과 친환경농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조)

다.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타 지자체 조례 현황 (총125개소 - 광역11, 특례시4, 기초110)

구 분	지자체명(년도)
광역자치단체(11)	강원(2023) 경기(2024) 경남(2018) 경북(2020) 서울(2019) 세종(2023) (구)광주(2014) (구)전남(2025) 제주(2026) 충남(2024) 충북(2022)
특례시(4)	고양(2019) 수원(2023) 용인(2017) 화성(2024)
도내 지자체(13)	거제(2023) 거창(2019) 고성(2018) 김해(2016) 남해(2023) 밀양(2014) 사천(2015) 산청(2023) 양산(2018) 의령(2021) 창녕(2015) 하동(2024) 합천(2015)

4 검토내용

□ 관계법령 저촉여부 : 해당 없음

□ 입법 필요성

○ 창원시 친환경농업의 기반 조성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친환경농업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의 핵심 전략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함.

□ 재정부담

○ 비용추계 : 3,294백만원/년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예 산 소요액 (천원)	계	4,612,420	3,102,793	3,195,875	3,291,753	3,390,504	3,492,220
	국비	1,115,800	531,274	547,213	563,629	580,538	597,954
	도비	723,886	230,602	237,520	244,647	251,987	259,546
	시비	2,772,734	2,340,917	2,411,142	2,483,477	2,557,979	2,634,720

○ 본 조례는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 편성된 예산 범위내 지원하는 사업이며 **제정 자체로 새로운 의무적 재정 지출이 발생하지는 않음.**

5 종합의견 의원발의(안) 수용

○ 본 조례안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창원시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와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친환경농업의 생산기반 강화와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제정에 동의함.

붙 임 1. 의원 발의 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1부. 끝.

붙 임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안 제6조(친환경농업육성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7년 ~ 2031(5년간)

○ 비용추계 대상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

나. 추계 결과 ※매년 3% 확대 적용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예 산 소요액 (천원)	**계**	**4,612,420**	**3,102,793**	**3,195,875**	**3,291,753**	**3,390,504**	**3,492,220**
	국비	1,115,800	531,274	547,213	563,629	580,538	597,954
	도비	723,886	230,602	237,520	244,647	251,987	259,546
	시비	2,772,734	2,340,917	2,411,142	2,483,477	2,557,979	2,634,720

다. 재원조달방안

○ 국도비 보조 및 일반회계 시비로 편성

3. 작성자

○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과장 서혜영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년도 (2026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계
세 입		1,839,686	761,877	784,732	808,275	832,524	857,498	5,884,592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국비)		356,928	367,636	378,665	390,025	401,726	413,777	2,308,757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국비)		1,100,000	0	0	0	0	0	1,100,000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국비)		21,518	22,164	22,828	23,513	24,219	24,945	139,187
토양개량제 지원(국비)		267,200	275,216	283,472	291,977	300,736	309,758	1,728,359
유기질비료 지원(도비)		80,000	82,400	84,872	87,418	90,041	92,742	517,473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지원(도비)		12,660	13,040	13,431	13,834	14,249	14,676	81,890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도비)		1,380	1,421	1,464	1,508	1,553	1,600	8,926
세 출		4,612,420	3,102,793	3,195,875	3,291,753	3,390,504	3,492,220	21,085,565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국비)		549,120	565,594	582,561	600,038	618,039	636,581	3,551,933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국비)		1,600,000	0	0	0	0	0	1,600,000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국비)		37,100	38,213	39,359	40,540	41,756	43,009	239,977
토양개량제 지원(국비)		308,000	317,240	326,757	336,560	346,657	357,056	1,992,270
유기질비료 지원(전환)		1,541,100	1,587,333	1,634,953	1,684,002	1,734,522	1,786,557	9,968,467
유기질비료 지원(도비)		400,000	412,000	424,360	437,091	450,204	463,710	2,587,365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지원(도비)		42,200	43,466	44,770	46,113	47,496	48,921	272,966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도비)		6,900	7,107	7,320	7,540	7,766	7,999	44,632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시비)		12,000	12,360	12,731	13,113	13,506	13,911	77,621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시비)		40,000	41,200	42,436	43,709	45,020	46,371	258,736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시비)		50,000	51,500	53,045	54,636	56,275	57,964	323,420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시비)		26,000	26,780	27,583	28,411	29,263	30,141	168,178
재원 조달		4,612,420	3,102,793	3,195,875	3,291,753	3,390,504	3,492,220	21,085,565
의존재원	보조금	1,839,686	761,877	784,732	808,275	832,524	857,498	5,884,592
자체수입	지방세	2,772,734	2,340,916	2,411,143	2,483,478	2,557,980	2,634,722	15,200,973